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참여신청 방법안내

기업참여신청 전 필독사항!

1. 운영지침을 꼭 한번 읽어주세요.

- 받으신 메일 또는 진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회원기업서비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본 사업은 원칙은, 기업참여신청 시 채용예정인원을 등록 후 실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3. 단, 기 채용자가 있을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업참여신청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0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 홈페이지
(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참여신청**

02

참여승인 후 채용계획에 따라 **정규직 채용 및 명단통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누리집으로 온라인 제출)

03

참여청년의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1회차 지원금 신청**
(최초 6개월은 1회차에 일괄 지급)

04

각 회차별 안내에 따라 **2회차/3회차/4회차 지원금 신청**
(남은 6개월을 2개월 나누어 신청)

이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 홈페이지
(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참여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2년 시행)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최대 12개월간 지원

더 알아보기

3 신청하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2020년시행 / 2021년시행)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

더 알아보기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2021년 시행)

청년을 신규 채용한 미래유망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

더 알아보기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 홈페이지
(www.work.go.kr/youthjob) 접속

2. 기업 로그인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공지사항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 2022-01-19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2022-01-19

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미래청년인재육... 2022-01-03

서식자료실



[서식]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2021-02-01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2021-02-01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2021-01-18

사업참여관리(도약장려금)

> 기업정보

기업 정보 수정

기업명	진주상공회의소
지사명	본사
대표자	이영춘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55 , 진주상공회의소 3층 (상대동)

참여신청관리

채용자명단관리

-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에 대한 처리상태 및 협약체결상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여신청 현황

등록된 참여신청서가 없습니다.

1

사업참여 신청

1. [사업참여 신청] 클릭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기업참여신청방법(3)

> 참여신청서

- *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반드시 기입해주세요.
- 장시간 내용을 작성하시는 경우 저장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시저장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메모장 등에 먼저 작성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운영기관 선택

담당 운영기관*	<input type="text" value="진주상공회의소"/>	운영기관찾기 1
----------	--------------------------------------	-----------------

▶ 대표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진주상공회의소 (본사)	대표자명	이영춘
사업자등록번호 (지사번호)	6138200189 (1)	법인등록번호	<input type="text"/>
업종	산업 단체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input type="text" value="61382001890"/> 관리번호찾기 2
소재지	(52782) 경남 진주시 동진로 255 (상대동)		
피보험자수* 3	<input type="text" value="15.2"/> 명	* 대표 사업장의 참여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조회됩니다.	

- 참여 신청서 하단에 있는 참여자격 제한 사유(지원제외 기업, 지원제외 청년)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업장
- 대표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이 있는 경우 관련 사업장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사업장에 추가된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는 기존 피보험자 수에 합산됩니다.
- 해당하는 기업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운영기관 찾기

- 진주상공회의소 선택

2. 관리번호 찾기

- 클릭 시 피보험자 수 자동산정

3. 피보험자수 확인

- 클릭 시 피보험자 수 자동산정
(단,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 성립 일이 속한 월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조회)

※ 피보험자 수는 수정 불가 (조회된 값을 그대로 사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참여신청방법(4)

- 참여 신청서 하단에 있는 참여자격 제한 사유(지원제의 기업, 지원제의 청년)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업장
 - 대표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이 있는 경우 관련 사업장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사업장에 추가된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는 기존 피보험자 수에 합산됩니다.
 - 해당하는 기업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 수
 -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기준 참여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조회됩니다.
 - 단,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조회됩니다.
- 기준 피보험자 수 : 대표 및 관련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 합산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지원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에 수도권 기업의 경우 50%,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10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 올림(최대 30명)

▶ 관련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업종
피보험자수 <input type="text"/> 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input type="text"/> 관리번호찾기 1
소재지	<input type="button" value="항목삭제"/>
<input type="button" value="+ 항목추가"/>	

기준 피보험자 수* 2 <input type="text" value="16"/> 명 ※ 대표 및 관련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 합산 후 소수점 이하는 올림 (사업장 합산)	수도권 기업여부* <input type="radio"/> 수도권 <input checked="" type="radio"/> 비수도권	지원한도* 3 <input type="text" value="16"/> 명 ※ 기준 피보험자 수(수도권 50%, 비수도권 100%)로 조회,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	--

1. 관리번호 찾기 클릭

- 클릭 시 대표 사업장 하나만 있을 경우, SKIP

2. 기준 피보험자 수

- 대표 및 관련사업장의 피보험자 수 합산(수정불가)

3. 지원한도

- 클릭 시 피보험자 수 자동산정(수정불가)
- 수도권 기업여부가 수도권인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소수점 이하 올림)
- 수도권 기업여부가 비 수도권인 경우, 기준피보험자 수의 100% (소수점 이하 올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참여신청방법(5)

▶ 기업 구분(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1

기업 구분* (해당되는 분야에 모두 체크)	<input type="checkbox"/>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 수 평균을 소수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5명 이상일 경우) <input type="checkbox"/> 성장유망업종 <input type="checkbox"/> 지식서비스산업 <input type="checkbox"/> 신재생에너지산업 <input type="checkbox"/> 문화콘텐츠산업 <input type="checkbox"/> 청년창업기업 <input type="checkbox"/> 미래유망기업 <input type="checkbox"/> 지역주력산업 <input type="checkbox"/> 고용위기지역 기업 <input type="checkbox"/> 특별고용지원업종
-----------------------------------	--

-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채용계획 2

채용예정인원*	<input type="text"/> 명	근로계약형태*	선택 <input type="button" value="v"/>	
근무시간*	주 <input type="text"/> 시간 ※ 근무시간은 주 30시간 이상만 가능	월급여*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button" value="항목삭제"/>
<input type="button" value="+ 항목추가"/>				

1. 기업 구분

- 해당되는 모든 분야를 체크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한 기업의 경우 산업별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 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

2. 채용 계획

- 채용계획을 기재
- 채용예정인원: 2022년도 채용예정인원 기재
- 근로계약형태: 정규직/계약직 선택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가입 가능)
- 월급여 : 신규채용자 지급예정인 평균급여 입력(세전)
※ 채용조건 및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항목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참여신청방법(6)

▶ 채용자 정보 1

- 등 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을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먼저 채용한 경우 (해당시 체크)
- 해당 채용자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지원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성명	<input type="text"/>	채용일	<input type="text"/>	항목삭제
				+ 항목추가

▶ 담당자 정보 2

담당부서	<input type="text"/>	담당자명*	<input type="text"/>
전화번호*	<input type="text"/> 선택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팩스번호	<input type="text"/> 선택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이메일*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기타(직접입력) <input type="text"/>	

▶ 첨부서류 등록 3

첨부서류	<p>※ 개인정보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마스킹처리하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p> <p>※ 5인 미만 예외 기업 입증서류(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확인서 등을 첨부</p> <p>※ 파일은 최대 5개까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용량 : 20MB 이하)</p> <p>※ 등록 가능한 형식은 gif, jpg, jpeg, bmp, png, ppt, pptx, dcc, docx, hwp, xls, xlsx, pdf, txt, zip, egg 파일입니다.</p>	파일찾기	선택파일삭제
------	---	------	--------

1. 채용자 정보

- 기업의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체크 후 기재**
-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미기재(향후 정규직전환 후 명단 통보)

※ 등록할 채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항목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2.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 기재
(향후 사업안내 및 주요변경내용 고지를 위해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3. 첨부서류 등록

- **사업자등록증 첨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참여신청방법(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1

<p>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기업 * 성립 후 1년 미만 기업은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 * 단, 성장유망업종 등 예외 대상으로서 5인 미만인 경우 "아니오"에 체크 ※ (주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지연 등에 따라 추후 피보험자 수가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신청 승인 여부 및 지원 한도도 달라질 수 있음</p>	<p><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요</p>
<p>② 소비·향락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p>	<p><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요</p>
<p>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p>	<p><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요</p>
<p>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p>	<p><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요</p>
<p>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p>	<p><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요</p>
<p>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p>	<p><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요</p>
<p>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가능</p>	<p><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요</p>
<p>⑧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지원대상 청년 고용이후 1년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 청년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청년 채용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고용 이후 1년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p>	<p><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요</p>
<p>⑨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p>	<p><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요</p>

1. 지원제외 기업(해당여부 체크)
· "예"를 선택한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신청불가

지원제외 청년(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1

① 채용일 현재 청년(만 15세~34세 이하)이 아닌 자 *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input type="checkbox"/> 확인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 취업중인 자 :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input type="checkbox"/> 확인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단, "특례"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에 해당하는 자는 가능	<input type="checkbox"/> 확인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input type="checkbox"/> 확인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input type="checkbox"/> 확인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input type="checkbox"/> 확인
⑦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자	<input type="checkbox"/> 확인
⑧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 단,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input type="checkbox"/> 확인
⑨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input type="checkbox"/> 확인
⑩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input type="checkbox"/>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2

예 아니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참여신청방법(8)

1. 지원제외 청년(해당여부 체크)

- 기업담당자가 향후 지원대상이 될 청년의 지원자격을 확인하였음을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 확인에 체크하지 않은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신청불가

- 해당 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체크 바랍니다.

2. "아니오"선택 시, 신청 불가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임시저장

2 참여신청

목록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 사업주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동의합니다" 미체크 시, 신청불가

2. 참여신청

- 위의 *(필수항목)이 모두 작성된 경우 신청 가능

문의처

기획조사부 강성원 주임 / 김대호 사원

Tel 055-753-0413

Fax 055-758-8220

